

의안번호	2213007
의 퇴 인	조승환의원
회 답 일	2025.10.24.
추 계 번호	25D51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2차관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6,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3억 5,100만원 (연평균 4억 7,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해양수산부에 2차관 신설	464	455	466	477	489	2,351	4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 (행정각부)	-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둠 : 차관이 2명인 부(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3조(국토교통부) 및 안 제44조(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조선 관련 사무,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행정각부)	○	-

2	안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3조(국토교통부) 및 안 제44조(해양수산부)	-	미대상: '조선'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정책실 조성해양플랜트과에서 수행 중임. 또한 해안 및 간척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및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일부 인원이 수행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 또는 예산 증가 없이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대상에 해당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에 2차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2차관 및 비서실 직원의 보수 및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신설되는 2차관 비서실 직원의 정원 및 직급은 현 차관 비서실 직원의 정원 및 직급을 준용하여 3인(5급, 7급, 9급 각 1인)으로 가정함
- 2차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은 기존의 유희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2차관 신설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과 기관부담금요율,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로 가정함¹⁾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신설되는 차관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2025년 차관의 연봉액 1억 4,538만원으로 하고, 비서실 직원 3명의 보수는 해양수산부 동일 직급의 연봉액을 준용한 후 직급보조비 및 각종 수당을 반영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2025년 직급별 1인당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차관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5급	75,678	5,160	3,000	1,680	480	80,838
7급	44,372	4,320	2,160	1,680	480	48,692
9급	32,403	4,260	2,100	1,680	480	36,663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총액) 2차관실 신설에 따른 증원인원과 1인당 보수를 곱하여 보수 총액을 산출하면, 추계기간 동안 17억 8,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직급별 1인당 보수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차관	1명	167	171	175	179	183	874
5급	1명	85	87	89	91	93	445
7급	1명	51	52	54	55	56	268
9급	1명	38	39	40	41	42	202
합계	4명	341	349	357	366	375	1,78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연동되므로,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2억 3,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4]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부담금	45	46	47	49	51	2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해양수산부의 2025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7%²⁾를 앞서 추계된 보수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3억 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58	59	61	62	64	3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인원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만 발생하며 2,000만원으로 추계

[표 6]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20	-	-	-	-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2차관을 신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6,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3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341	349	357	366	375	1,788
기관부담금	45	46	47	49	51	238
기본경비	58	59	61	62	64	304
자산취득비	20	-	-	-	-	20
합계	464	455	466	477	489	2,351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5년 예산에서 해양수산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액 및 수당 등에 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지급 수당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